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4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임직원	甲

2. 조치내용

○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가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금지의 위반에 대하여 甲에 문책경고 조치

3. 조치이유

가. 자전거래 제한 위반

□ 집합투자업자는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본인이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과 거래하는 행위(이하, '자전거래')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,

○ 제이씨에셋자산운용㈜(이하 '제이씨에셋')은 20xx.xx.xx. 매도펀드(㉮펀드)의 신규CB 매입자금 확보를 위해 매도펀드로부터 매수펀드(㉯펀드)로 자전거래(약 XX억원)를 수행하였음

4. 근거법규

□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5호, 제422조 제1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1항 제3호